

계통연계비 FAQ 및 유의사항

Q.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,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등은 어디서 받나요?

-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(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발전소 준공시 업체에게 문의하면 확인가능)

Q.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언제 기준이며 둘 다 내야하나요?

- 모두 공고일(5월 7일) 이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. 국세/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뽑아야하나요?

-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개인,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입니다.

Q. 한명(혹은 한 개)의 사업자 명의로 100kW이하 발전소가 여러 개인데 지원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- 각 발전소 합산하여 사업자당 최대 100kW 지원가능합니다.

Q. 용량이 사업개시 공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확인증이 다른데 무엇이 기준인가요?

-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이 기준입니다.

Q. kW당 지원단가는 언제알수있나요?

- 이의 신청기간 이후 확인 가능하며, 지원단가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Q. 신청자격인 '2023년'에 사업개시신고를 수리의 기준은?

-> 시·군에서 발급받은 사업개시신고 수리 공문의 **결재 날짜(㉔)** 기준입니다. 사업개시일자(㉑)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 시·군에서 발급한 공문의 하단의 결재일(혹은 시행일)기준으로 **2023년**이어야 합니다.

2021.2.2

수신 수신자 함초
(공문)
제목 전기(발전)사업 개시신고 수리 알림

1. 귀 사(기관)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 개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발원소명	대공소 (해당발전)	발전용량 (kW)	발원소명 (발전소명)	개시일자	비고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	----

①사업개시일자

2021.2.2

②사업개시신고수리일자

- 유의 사항 -

1. 신청서 접수 시 동일 건의 중복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고,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2.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FAQ(자주 묻는 질문)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.
3. 한 사업자에 2개 이상의 발전소가 있을 시 발전소 별로 각각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4. 신청서는 도장날인하며, 법인은 법인 도장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. 지급 신청서 작성 방법

경기도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4. . .

대 표 :

(인 또는 서명)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<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>

- (수집목적) 사업수행(계획수립, 집행, 만족도 조사 등)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
- (이용방법) 지원사업의 대상자(기준) 적합 여부 확인 /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·정책 개발의 통계, 연구 등에 활용 /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

수집항목	○ (대표자) 성명, 연락처, 주소, 납세증명서, 보조금 입금용 계좌 ○ (사업장) 소재지, 용량(kW), 발전소 상호, 사업개시신고 수리 계통연계 공사비, 사업자등록번호, 발전사업허가증, 기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,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	확인 ☐
사용목적	○ 지원기준 적합·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○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○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·통계자료에 활용 ○ 발전소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(발전소 사진 등)	확인 ☐

「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」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경기도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발전현황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24 년 일 일

대 표 (인 또는 서명)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